

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2. 11. 27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1.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.11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2.11.27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준 범 사회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의 일몰제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「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4조의2 신설)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

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 연장

2)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시행일 규정(부칙안)

- 존속기한을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

3) 그 밖에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의 개정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 제4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0 안 제4조의2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”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”으로 하고, 안 제5조제4항 중 “전임위원의 남은 기간”은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